

오산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

제정 1991년 4월 8일 규칙 제 142호
일부개정 2014년 9월 5일 의회규칙 제2014-11호
(제명개정)
일부개정 2015년 1월 30일 의회규칙 제 15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오산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·제식 및 발급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4. 9. 5>

제2조(발급대상) 오산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 신분증(이하 “신분증”이라 한다)의 발급대상은 현직 의원으로 한다. <개정 2014. 9. 5>

[제목개정 2014. 9. 5]

제3조(규격·제식 및 색상)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,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, 그 규격·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.

②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에 의회마크를 표기하여 제작한다. <개정 2014. 9. 5>

[제목개정 2014. 9. 5]

제4조(발급권자) 신분증은 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발급한다. <개정 2014. 9. 5>

[제목개정 2014. 9. 5]

제5조(발급 및 재발급)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.

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 찍은 것이어야 한다. <개정 2014. 9. 5>

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[제목개정 2014. 9. 5]

제6조(회수)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

오산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

여야 한다.

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.

[제목개정 2014. 9. 5]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 9. 5 의회규칙 제2014-11호>

이 규칙은 의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 1. 30 의회규칙 제15호>

이 규칙은 의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<개정 2015. 1. 30>

의원신분증(제3조 관련)



(전 면)

(후 면)

(주)

1. 사진의 규격 등
 - 가. 사진창(가로×세로 = 24×30mm)
 - 나. 사진인쇄(전면) : 칼라전사
 - 다. 신상정보(전·후면) : 먹 전사
2. 원단은 아이에스오(ISO) 규격의 피브이씨(PVC) 카드로 한다.
 - 가. 규격(가로×세로×두께 = 54×85.6×0.8mm)
3. 발급번호는 발급 년도에 일련번호 순으로 한다.
4.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.
 - 가. 바탕 : 흰색
 - 나. 모양 : 청색, 하늘색
 - 다. 의회회장 배경바탕 : 금색(또는 백색)
5. 인쇄사양은 옅색 및 실크인쇄로 한다.
6.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정장 상의에 매달 수 있게 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신 분 증 명 단

| 결재란 | 신분증번호 | 발급년월일 | 성명 | 주민등록번호 | 신규제발급 | 회수여부 | 재발급사유 | 반환 | 사진 | 비고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|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|----|----|
| | | | | | | | | | | |

[별지 제2호서식]

신분증 재발급 신청서

1. 성 명
2. 주민등록번호
3. 신분증번호
4. 재발급신청사유

첨부 : 사진 2 매

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신청인

인

190mm×268mm